

부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4월 5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4월 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2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6. 4. 17) 상정

○ 제12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6. 4. 17) 수정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김 영 국)

가. 제안이유

○ 고질체납자 및 납세능력 있는 고액체납자, 유채동산 체납처분 등의 강도 높은 채권회수를 전담할 징수기동팀 운영의 사기 진작과 비전임계약직원 채용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를 정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과년도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개인별 3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하고, 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은 개인별 500만원까지로 지급규정 신설
(안 제6조제1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전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자치단체는? ○ 평균 보수(급여)는 얼마로 책정하고 있는가? ○ 포상금이 보수(급여)수준 보다 높게 책정이 되는 사유는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원, 안산, 시흥 등 우리시 보다 먼저 운영하는 단체가 있음. ○ 월 1백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음. ○ 고액채납자 및 고질채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특별히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책정하게 되었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

○ 개정 조례(안) 제6조(지급한도) 제1항 개인별 월 3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인근 시, 군과 비교 시 형평성에 맞도록 월 100만원으로 수정 의결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가 됨.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499호
의결 연월일	2006. 4. 19. (제126회)

제안년월일 : 2006. 4. 17

제안자 : 기획재정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 조례(안) 제6조(지급한도) 제1항 포상금 지급을 개인별 월 3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인근 시, 군과 비교 시 형평성에 맞도록 월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고자 수정.

2. 주요골자

- ‘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개인별 월 300만원’을 ‘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개인별 월 100만원’으로 수정
(안 제6조 제1항)

부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 제1항 중 ‘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개인별 월 300만원’을 ‘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개인별 월 100만원’으로 한다.

(안 제6조 제1항)

신 ·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지급한도) ①제4조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, 개인별 지급액은 월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6조(지급한도) ①----- ----- ----- 개인별 월300만원 --- --제5조 규정에 의한 포 상금은 개인별 월500만원 -----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6조(지급한도) ①----- ----- ----- 개인별 월100만원 --- ----- -----.</p> <p>②(생략)</p>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”를 “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중 “1건당 30만원”을 “개인별 월 100만원”으로, “개인별 지급액은 월 100만원”을 “제5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개인별 월 500만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중 “부천시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”을 “「부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」”으로 하고, 제9조제3항중 “지방세법시행령”을 “「지방세법시행령」”으로 하며, 제9조의2중 “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</u></p> <p>제3조(지급대상)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.</p> <p>1.~4. (생 략)</p> <p>제6조(지급한도) ①제4조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<u>1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, 개인별 지급액은 월100만원</u>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7조(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등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는 세입업무담당국장이 되고, 구는 구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</u></p> <p>제3조(지급대상) -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지급한도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개인별 월 100만원</u> -----</p> <p>-----<u>제5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</u>은 <u>개인별 월 500만원</u>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자 중에서 시장(구는 구청장)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④·⑤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